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의 근로 연계를 통해 자립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1)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 3)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 4)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

다. 위탁사무

- 1)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발, 관리
- 2) 참여자 직무 배치, 사업운영 전반

라.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간 * 2027. 1. ~ 2029. 12.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16,084천원 * 2027년 예산 기준

(단위: 천원)

계	인건비	퇴직금	운영비	비 고
216,084	178,464	17,028	20,592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2026년 제1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아. 부서의견

- 1)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으로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시각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2) 시각장애인안마사를 운영·관리하는 사업의 특성상 관련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므로 시각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3) 이에 장애인일자리 채용 및 채용인력 관리, 자원 연계 등 사업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1. 평가개요

- 기 간 : 2026. 4. 15.(수) ~ 17.(금)
- 대 상
(위탁기관) (사)대한안마사협회 경북지부
(대상사업)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 평 가 자 : 3명(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지원팀장, 담당자)
- 평가방법 : 운영점검 및 성과평가 기준표에 의한 서면평가
- 위탁기간 : '24. 1. 1. ~ '26. 12. 31.(3년간)
- 사업내용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안마사 배치 및 서비스 제공
- 평가지표 : 민간위탁사무 평가지표
 - 공통분야(40) : 사업계획(10), 인력관리(10), 예산관리(10), 성과관리(10)
 - 개별분야(60) : 전문성(15), 자원관리(15), 사업실적(15), 만족도(15)
 - 감 점(-5) : 임금체불 및 지도점검 개선사항 이행여부 등(-5), 경고(-3), 주의(-1)

부문	공통분야(40점)				개별분야(60점)				감점 요소	총점
평가 항목	사업 계획	인력 관리	예산 관리	성과 관리	전문성	자원관리	사업실적	만족도	감사 결과	
배점	10	10	10	10	15	15	15	15		100
평점	8	8	4	6	12	9	9	12		68

2. 평가결과

- 평가점수 : 68점(보통)
- 총 평
 - 취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장애 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함
 - 배치기관을 추가 확보하여 참여자의 선택권 확대 및 민간취업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직업상담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필요

2025년도 민간위탁사무 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위탁사무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 감사기간 : 2026. 4. 24.(금) ~ 5. 7.(목)
- 감사범위 : 2025. 8 ~ 2026. 4. 위탁업무 관리·운영실태 전반
- 감 사 반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장 외 1명
- 감사방법 : 서면감사

2. 감사결과

- 지적사항 : 3건(시정 2건, 계도 1건)
- 감사내용

분 야 별	감사내용 (검토 또는 조치사항)	조치계획(의견)	비고
운영전반	참여신청서류 확인 및 관리 미흡	참여신청서류 확인 및 관리 철저	계도
	참여조건합의서 필수 기재사항 미작성	참여조건합의서 미작성 부분 수정 및 기입 철저	시정조치
예산회계분야	운영비 지출증빙서류 일부 누락	예산 집행 시 지출증빙서류 확인 및 관리 철저	시정조치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시각장애인의 근로 연계를 통해 자립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 본 사업은 안마사 자격 확인, 수요처(경로당 등) 발굴 및 매칭 등 시각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적인 네트워크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 측면에서 타당함.
- 저조한 예산 집행으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가 낮게 평가되고 감사 결과 3건의 지적사항(시정 2, 계도 1)이 발생한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한 회계처리와 적극적인 수요처 발굴을 통하여 예산 집행을 제고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 또한, 안마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자 대상 직무 역량 강화 및 고객 응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관리가 수반되어야 함.